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들을 신설하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2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사항을 정하고, 공시송달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제명)
- 나.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기록, 간사 지명 방법, 참석 위원에 대한 회의안건 사전 통보, 원격영상회의 개최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다. 위원회 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 등의 소관사무를 구분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 지명, 간사 지명 방법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라. 위원회는 법률에 정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마.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로 회부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회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해당안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관할)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분쟁”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위원회가 관할하는 환경분쟁의 재정 및 중재사무는 조정 목적의 가액(價額)(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

하인 환경분쟁의 재정 및 중재사무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환경분쟁의 재정 또는 중재사무는 제외한다.

제4조(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위원회가 관할하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사무의 반기별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위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조사반 반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사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위원회 조사관의 자격 요건)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사무기구 또는 사무국의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위원회 사무기구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앙위원회 소속 공무원

가. 7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5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업무를 담당할 것

2. 지방위원회 사무국 조사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가.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일 것

나. 법 제5조제1호부터 제2호 까지의 업무를 담당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8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으로서 환경부 또는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일 것

제7조(중앙위원회 전원회의) ① 위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시간·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법 제5조제3호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결정·재결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하나 이상씩 둔다.

1.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가.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나.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

2.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구제급여 선지급에 대한 결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 제25조제3항 구제급여 일부의 선지급 결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및 피해등급의 결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중단 결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심의 절차 중지결정

나.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취소,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 및 제19조에 따른 요양급여 등의 지급중단 결정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제2항에 따른 각하,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 변경 및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3.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제25조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및 제37조제4항에 따른 환수금에 관한 사항의 재심사

나.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사항의 재심사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에 관한 사항,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 변경 및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의 재심사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분과위원회 구성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을,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 및 제34조,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및 제35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9 및 제48조의제13에 따른 심의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⑥ 분과위원회 회의의 간사 지명, 회의 소집 방법 및 원격영상회의 방식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7조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전자민원창구 구축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각호와 같다.
1. 법 제30조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 신청 및 조정·재정·중재위원회 결정 등에 관한 업무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신청 및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관한

업무

3.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 및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에 관한 업무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및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관한 업무

제10조(의결 결과의 송달 방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등의 결과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교부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송달 장소(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중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의 요건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조사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시송달을 한 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효력 발생일 전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취소하고,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제척·기피 등) ① 당사자는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위원회에 그 사유와 소명(疏明)방법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자료제공 협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의료기록·건강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3.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5. 「충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

약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화약류 사용자의 화약류 출납부

6. 환경피해 관련사업자 등 지도·점검자료

7.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국세 납부서

8. 「지방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세 납세고지서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검사서류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단서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11.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12.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13.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14.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자료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16.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수급자격의 조사에 관한 자료

1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다른 분과위원회 등 회부) 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 등으로 회부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받거나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급여 신청된 안건을 다른 분과위원회 등으로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다른 분과위원회 등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재정·중재위원회로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제29조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 ④ 다른 분과위원회 등으로 회부 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30조제7항, 「청원법」 제21조제2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5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4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4항 및 제48조의13제3항에 따른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5조(조사반의 구성·운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하

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 중앙건강피해조사반
2. 지방위원회: 지역건강피해조사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반은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강피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2. 환정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지역건강피해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16조(신청서의 기재 사항)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원 신청서 및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의 경우
 - 가. 청원인의 성명, 주소 또는 실거주지
 - 나.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신청취지 및 이유, 피해발생 일시·장소, 경과,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 다.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 오염도 측정자료 등)

라. 주변지역 환경유해인자 배출에 관한 자료(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기타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등)

2. 알선·조정(調停)의 경우

가.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나.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다. 환경분쟁의 경과

라. 알선·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마. 그 밖의 참고자료

3. 재정의 경우

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나.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1) 법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사실 또는 예상피해사실

2) 법 제56조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금액 또는 예상피해금액

4. 중재의 경우

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나. 중재를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다.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라. 중재를 통하여 환경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마.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당사자가 합의한 위원의 명단(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예상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사업의 시행자·규모·위치·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다.

제18조(신청의 변경) 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
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구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
재의 절차(이하 “환경분쟁 조정절차”라 한다)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위원회는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신청 또는 제18조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분(副本)
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조정의 처리기간) ① 법 제3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알선의 경우: 3개월
2. 조정 또는 중재의 경우: 9개월

3. 재정의 경우

가.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나.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제21조(신청의 철회)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의 철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제22조(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却下)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3조(참가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절차에 참가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의 부분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경정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건번호, 사건명, 경정 전후의 피신청인 및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은 경정신청서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분쟁 조정절차의 분리·병합)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환경분쟁 조정절차의 계류(繫留)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환경단체의 요건)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2.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 분야 활동 실적이 2년 이상일 것

제28조(조정비용)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조사관·직원 및 전문위원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전문위원의 조사 비용

3. 법 제23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4. 법 제59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5. 환경분쟁 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제29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③ 환경분쟁의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를 구하는 금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④ 중앙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30조(위원의 지명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6조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43조제2항·제47조제2항·제57조제2항 또는 제68조제2항에 따른 알선위원·조정위원·재정위원 또는 중재위원(이하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위원”이라 한다)을 지명하고, 당사자 등에

게 지체 없이 그 명단과 해당절차에 관여하는 조사관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위원이나 담당 조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조사관의 명단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알선 중단의 통지) 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알선이 중단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환경분쟁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한 환경분쟁
3. 환경분쟁 조정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환경분쟁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및 조사관을 지명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조정위원이나 담당 조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조사관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조서의 작성 등)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 내용
5. 작성일

제34조(10명 이상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사건) ①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 환경피해로 인하여 5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환경분쟁사건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환경분쟁사건
3. 환경피해 중 건강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서 조정가액이 20억원 이상인 환경분쟁사건
4. 그 밖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환경분쟁사건

② 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2억원 이하인 환경분쟁사건
2. 지방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환경분쟁사건

제35조(조서의 작성)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심문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조사관에게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여한 재정위원과 조사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문 또는 조사 등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당사자들의 성명
4. 심문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시 그 이유
5. 심문 또는 조사 등의 방법 및 내용
6. 그 밖에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6조(출석의 요구 등)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사람(당사자는 제외한다) 또는 감정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일당과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들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제37조(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

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입증할 사실
3. 증거의 내용
4. 증거보전신청의 사유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증거조사의 기일과 장소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재정의 경정)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誤記)·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을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9조(문서 등의 이송) 재정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재정신청된 사건을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촉탁받은 원인재정의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6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원인재정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원인재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

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수소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제41조(준용규정) 중재의 조서 작성, 출석의 요구 및 증거보전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는 “중재위원회”로, “재정”은 “중재”로 본다.

제42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3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등은 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 사건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②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

2.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라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3. 법 제16조에 따른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석면피해구제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4. 법 제16조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제4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제44조에 따라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영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추천·위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법 제47조 조정위원회, 법 제57조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 중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27조에 따른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30조에 따른 조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에 따른 대표자 선정 및 해임·변경에 관한 사무
 9. 법 제35조에 따른 피신청인 경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36조에 따른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 허가에 관한 사무
 11. 법 제60조에 따른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12. 법 제72조에 따른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 제4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별표 1]

수수료(제29조제1항 관련)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알선신청	10,000원
조정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 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 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더한 금액
원인재정	신청인 수에 2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책임재정 또는 중재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 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 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참가신청	1. 조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재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증거보전신청	5,000원

비고

1.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제29조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면제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제4항(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2조 제1항	100	200	300

나.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1)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2항 제1호	10	20	30
2)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2조제2항 제2호	10	20	30
3) 거짓 문서·물건을 제출한 경우	법 제92조제2항 제2호	30	60	100
다. 법 제59조제4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거짓으로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법 제92조제3항	10	20	30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연 락 처	(044) 201 - 7955